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23 발의연월일: 2023. 8. 8.

발 의 자: 강민정·서동용·민형배

양이원영 · 김용민 · 김승원

진성준 · 최강욱 · 문정복

김경만 · 김영호 · 이용우

양정숙 • 윤미향 • 권인숙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제3 항 및 제4항, 제18조의5, 제20조제1항, 제20조의3, 제30조의10의 규정 을 유치원에 준용함(안 제36조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37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준용)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, 제18조의5, 제20조제 1항, 제20조의3, 제30조의10의 규정은 이를 유치원에 준용한다. 이경우 준용 규정 중 "학교의 장"은 "원장"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6조(「초・중등교육법」의 준
	용)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
	관하여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<u>1</u>
	8조의4제3항 및 제4항, 제18조
	의5, 제20조제1항, 제20조의3,
	제30조의10의 규정은 이를 유
	치원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준용
	규정 중 "학교의 장"은 "원장"
	<u>으로 본다.</u>